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70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고동진 · 권성동 · 박상웅  
박성민 · 나경원 · 이인선  
성일종 · 서범수 · 강선영  
박덕흠 · 김대식 · 강명구  
한기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공공단체 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장 등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

1호다목 및 제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수를 가진 노동조합

제4조제1호 중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을 “노동조합이 위탁하는 선거 및 같은 조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목”을 “마목”으로, “제1호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조합의 위탁선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lt;신 설&gt;</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라.</u> (생략)</p> <p>2. ~ 8. (생략)</p> <p>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p> <p>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u>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u></p>	<p>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수를 가진 노동조합</u></p> <p style="padding-left: 20px;"><u>라.·마.</u>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p> <p>2. ~ 8. (현행과 같음)</p> <p>제4조(적용 범위) ----- -----.</p> <p>1. ----- ----- ----- -----<u>노동조합이 위탁하는 선거 및 같은 조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u></p>

<p>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 목 및 <u>라</u>목에 해당하는 공공 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 은 조 <u>제1호다</u>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p>	<p><u>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하여야 하는-----</u> 2. ----- <u>마</u>목----- ----- <u>제1호라</u>목----- ----- -----</p>
--	--